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군세 감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중복감면의 배제 예외조항 신설(안 제10조)

-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,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도록 함.

나.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관련 관련조문 변경(안 제11조~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4. 8. 1. ~ 2014. 8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”를 “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제47조제1항”을 “제126조”로 한다.

제12조 후단 중 “영 제48조”를 “영 제12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	<p>제10조(중복감면의 배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</u> <u>용한다.</u></p>
<p>제11조(감면 신청)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47조제1항</u>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감면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126조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감면자료의 제출)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<u>영 제48조</u>를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감면자료의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 제127조</u>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 2270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

제126조(감면 신청)

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취득세 :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
2. 등록면허세 :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,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
3. 주민세 :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,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
4.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: 매년 1월 31일 이내(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)
5.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: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
6. 자동차세 :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·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·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.

제127조(감면자료의 제출)

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0조(중복 감면의 배제)

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 다만, 제73조, 제74조,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(제73조,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)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.